

<붙임 3> 입사지원서 양식

입 사 지 원 서

본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지원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제 출 일 : 20 년 월 일
제 출 자 : (서명)

1. 인적사항

지원구분 (근무희망지)	체험형 청년인턴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천본원 청년인턴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분원 청년인턴(강남) *근무가능지역 체크(복수가능)	접수번호	* 기재하지 않음
성 명		전자우편	
휴대전화		비상연락처 (휴대전화)	
가점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지원대상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보호대상자
	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(만34세이하) (*필수 해당사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수도권 지역인재	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가점 (해당내역 기재)

* 가점 사항 해당 시 해당 항목 체크 표시(중복체크 가능)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(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
2. 자격사항

*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(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
연번	자격명	발급기관	취득일자
1			
2			
3			
4			

3. 학교 및 학교 외 교육

※ 채용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
(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
교육기간	교육기관	교육내용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
4. 경험 및 경력

* 채용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고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
(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
기 간	근무처 등	담당업무 등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년 월 ~ 년 월		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Digitized by srujanika@gmail.com

지 원 자 : (서명)

자기소개서

지원분야	
성명	

1.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건설기술교육원에 지원한 지원동기를 기술해주세요.

3. 본인의 경험 및 역량 등을 기술해주세요. 또한 우리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우리 원 청년인턴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.

<붙임 4> 개인정보 동의서 및 취업제한 체크리스트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입사지원자용)

건설기술교육원 귀하

귀 교육원의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, 제17조 제1항, 제23조,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교육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▪ 채용 여부의 결정, 근로계약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, 경력·자격 등 확인(조회 및 검증) ▪ 민원처리, 분쟁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 등
수집·이용할 항목	▪ 개인식별정보 - 성명, 전화번호, 전자메일, 주소 - 경력사항, 자격사항, 특별사항(보훈사항,장애) 등
보유·이용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,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.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채용전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교육원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
2.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▪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: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관할 지방자치 단체, 수사기관, 감사원, 감독기관,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
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	▪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: 신원조회, 정부 시책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▪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 : 자격증·면허 등 자격증 진위 확인
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	▪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: 개인식별정보 등 정부 시책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▪ 자격증 진위 확인기관 : 개인식별정보 등 자격증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
변경에 관한 사항	위 제공대상 업체, 이용목적,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.
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	위 개인(신용)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민원처리, 분쟁 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에 대한 원활한 진행 및 향후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.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동의여부	교육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민감정보 동의여부	교육원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(장애 및 내역, 보훈)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제공·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: (서명)

부패방지권익위원회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법 제2조 제4호

-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총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

1, 2, 41, 42, 43 (모두 총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20 년 월 일

지원자 : (서명)